

방화관리 규정

제 정 : 2003. 12. 23.
개 정 : 2004. 5. 3.
개 정 : 2006. 6. 16.
개 정 : 2008. 3. 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 라 한다)의 방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방지 및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그 외에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험물 : 소방법이 정하는 발화성, 인화성물질 및 물품
2. 소방대원 : 대학교의 자율 소방대 구성원

제2장 조직·임무

제4조(조직) ① 총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“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 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.

1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,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
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관리기능장,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
3.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
4.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

② 각 실별 화기 책임자를 두며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화기 정책임자 : 방화관리자
2. 화기 부책임자 : 실별 책임자

③ 산불방지 및 방화순찰을 위하여 방화순찰원을 둘 수 있다.

④ 소방대원은 교직원, 학생 및 기숙사입주자로 구성한다.

⑤ 화재사고 시 화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심의회는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이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.

제5조(임무) ① 방화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계획서를 소방법에 의거 작성 비치
 2.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업무
 3. 주기적인 소방교육훈련
 4. 소방시설 유지보수
 5. 기타 소방관련 업무
- ② 화기 정책임자의 임무는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.
- ③ 화기 부책임자는 화기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1. 화기사용 및 위험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
 2.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대한 신속, 정확한 연락
 3.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의 반, 출입 통제
 4. 실내에서의 위험물사용 및 보관과 전열기구의 사용을 방화관리자에게 보고
 5. 각 실(과)에 배치된 소화기의 유지관리 및 손상실 발생 시 주관부서에 보고
- ④ 소방대원은 화재 및 교육훈련 시 부여된 개인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화재예방

제6조(교육훈련) ① 대학교 구성원 및 기숙사 입주자는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.

-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교육 및 훈련 불참자 또는 화재발생시 동원거부자는 대학교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순찰) 순찰은 교내순찰과 산림순찰로 구분하며, 교내순찰은 야간 및 교내의 경비업무와 병행하며, 산림순찰은 건물외곽 및 순찰로를 따라 실시한다.

제8조(화재보고)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자율소방대 편성) ① 화재의 발생 또는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자율소방대 편성은 소방계획서에 따른다.

제4장 소방시설물 유지, 보수

제10조(소방시설물 유지) 각종 소방시설물의 설치, 보수 및 운용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.

제11조(소방시설물 공사) ① 소방시설에 관한 공사는 시설관리팀에서 주관한다.

- ② 소방시설의 정비 및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소방검정품 및 K.S규격품을 사용하고, 검수 및 계약은 대학교 규정에 준한다.

- 제12조(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)** ①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은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며, 월간점검은 화기책임자가 시행한다.
- ② 소방시설의 정비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시행한다.
- ③ 건물의 용도 변경 및 개조공사 시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방화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.
- ④ 소방시설은 점검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방화관리자는 해당시설물을 개선, 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,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⑤ 기계, 전기, 대보수공사시나 용접기 및 화기의 사용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용소 화기를 배치 후 실시한다.

- 제13조(위험설비 유지관리)** ① 위험물의 제조, 저장 및 운반취급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고압가스의 제조, 저장 취급 및 관리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.
- ③ 각 실험실 등에 사용하는 위험물 및 가스는 실별 화기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며, 실별 화기책임자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.

제5장 준 용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규를 준용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시설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